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11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K-IFRS 新리세기준 도입 효과 및 주식 공시 유의사항 안내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세무 및 법률정보

-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등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019. 8. 1]

개요

I. 개요

□'19 년부터 운용리스 이용자도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K-IFRS 제 1116 호 '리스'(이하 新리스기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작년까지 비용으로만 처리하던 운용리스가 금년부터 자산과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되어

- 임차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19.1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운용리스가 재무제표에 반영된 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운용리스 관련 주석을 공시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新리스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 리스이용자 측면**

- (舊기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자산·부채를 각각 인식하나, 운용리스\*의 경우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 (新기준) 운용리스를 포함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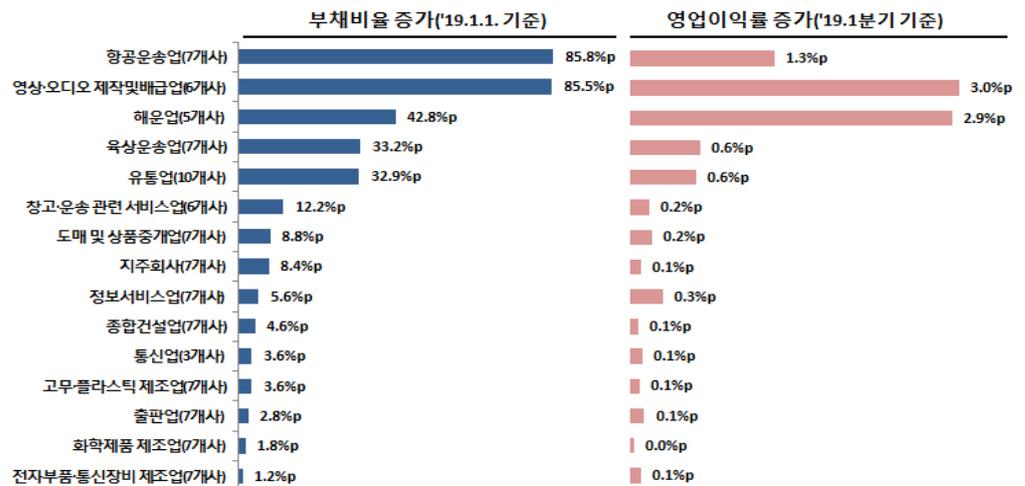
\* 단기리스(리스기간 12 개월 이하)와 소액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는 적용 배제 가능

재무적 영향

II.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재무적 영향

□ 15 개 업종(100 개사)의 리스기준 변경 효과(리스이용자 기준)를 분석한 결과, 新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종별 新리스기준 적용 효과 비교(연결재무제표 기준)



※ 분석대상 기업(100개사)은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 효과를 '19.1.1.에 모두 반영하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18년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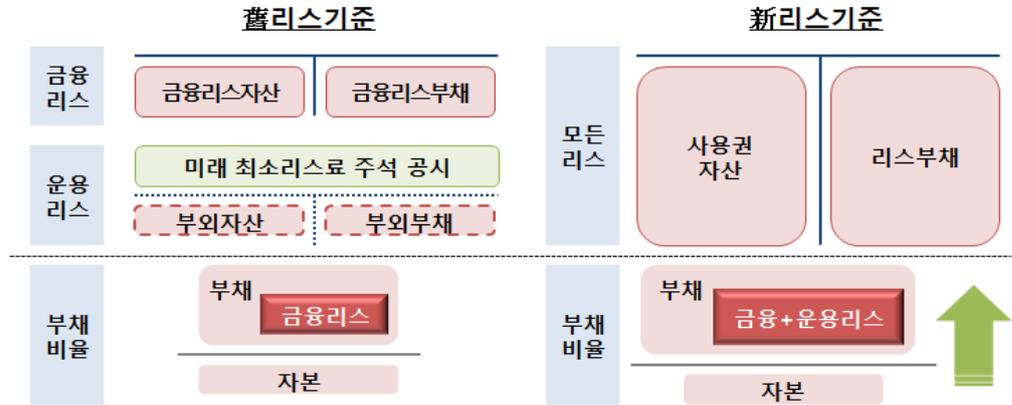
- 이에 부채비율은 '19.1.1일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19.1분기 기준으로 新·舊 리스기준 적용의 차이를 비교(분석 시 종전 금융리스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모두 운용리스 관련 효과로 가정)

1. 부채비율

□ 新리스기준 최초 적용 시 종전 운용리스에 대해 새로운 리스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영향은 운용리스 이용 비중, 총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상대적 규모 등에 따라 각 업종(1.2~85.8%p↑) 및 기업별(0~331.3%p↑)로 상이

개정 전·후 재무상태표 및 부채비율 영향 비교



◦ (운송) 항공기 운용리스 관련 부채 인식(7개 항공사 총 5.9조원↑)으로 항공운송업(평균 85.8%p↑)에 속한 기업(최대 238.6%p↑)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

- 해운업(평균 42.8%p↑)은 선박 운용리스 비중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은 기업(최대 2조원↑)은 부채비율(최대 189.0%p↑)이 크게 상승

◦ (영상.오디오) 주로 영화관 운영 등과 관련한 건물 및 시설물 리스가 많은 기업(최대 1.8조원↑)의 부채비율(최대 331.3%p↑)이 증가

◦ (유통) 유통업(평균 32.9%p↑)은 영업점포 등 부동산 리스 이용(10개사 부채증가 총 14.2조원↑)이 많아 부채비율 상승폭(최대 175.4%p↑)이 큰 수준

◦ (기타) 지주회사(7개사 총 9.4조원↑), 통신업(3개사 총 1.5조원↑), 전자부품 제조업(7개사 총 4.2조원↑) 등의 경우 리스부채 증가금액 자체는 크지만, 총 부채 대비 리스부채의 비중이 낮아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 영업이익률

□ 舊리스기준에서 영업비용이었던 운용리스료가 新리스기준에서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어서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전·후 손익계산서 영향 비교**



◦ 대부분 리스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규모가 큰 업종(항공·해운업,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등) 및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업종 최대 3.0%p↑)도 크게 나타났으나,

\*분석의 편의상 '19.1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舊리스기준에 따른 운용리스료와 동일하다고 가정(실제로는 각 리스 및 보고기간별로 일부 차이)

- 이자비용은 리스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나 사용권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는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추정치 약 1~10%)\*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기업 및 리스계약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이자율 추정은 '19.1분기 평균 리스부채 잔액 대비 리스부채 이자비용으로 산출

◦ 한편, 舊리스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新리스기준 적용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손실 폭이 크게 축소되기도 함

➡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변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할 필요

주석공시 유의사항

III. 주석공시 유의사항

□ 회계기준 변경 효과

◦ 일부 기업은 기준 변경효과를 공시하지 않거나 분기보고서 발행시점까지도 변경 영향을 분석 중에 있어, 기준 변경효과 파악이 곤란합니다.

- '19.1.1.에 新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여야 함

□ 리스 이용 관련 정보

◦ 관련 정보의 공시가 미흡하여, 리스 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

- 리스 이용 기업은 리스 활동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新리스기준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및 리스 이용 관련 정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항목(양적 정보는 표 형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 참고

향후 계획

IV. 향후 계획

□ 금강원은 기업이 新리스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결산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19.6.26. 보도자료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참고)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19.4.1. 시행)

공시 미흡 사례 (붙임) 주요 공시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

	주석 공시 미흡 사례	유의사항
(1) 新리스기준 최초 적용 관련 정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① <b>최초적용일 효과 미공시</b> - 新리스기준의 최초적용 효과를 전혀 공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공시	⇒ 최초적용일에 <b>자산·부채·자본</b> 에 인식되는 <b>누적효과</b> , <b>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금액</b> 등을 각각 공시(K-IFRS 1008.28)
	② <b>증분차입 이자율 미공시</b> -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공시하고, 적용 이자율은 공시하지 않음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측정 시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b>실제 가중평균 증분 차입이자율</b> 을 공시(K-IFRS 1116.C12(1))
	③ <b>종전 운용리스의 전환시점 정보 미공시</b> -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총액만을 공시 (전기말 운용리스약정과 비교가 어렵고, 종전 금융리스부채 효과가 불명확한 등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18 년 말 공시한 <b>운용리스약정액</b> 및 이를 <b>할인한 금액</b> 에서, 종전 금융리스부채, 단기·소액리스 등의 <b>조정사항</b> 을 반영하여 <b>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 금액</b> 을 산출하는 <b>과정</b> 을 상세하게 공시(K-IFRS 1116.C12(2))
(2) 리스 이용 관련 정보	① <b>유형별 사용권자산 금액·상각비 미공시</b> - 유형·별 구분 없이 총 합계액만 공시 *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	⇒ <b>기초자산의 각 유형별</b> (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로 구분하여 사용권자산의 <b>장부금액</b> 및 <b>감가상각비</b> 를 각각 공시(K-IFRS 1116.53(1),(10))
	② <b>리스부채 이자비용 미공시</b> - 리스부채와 다른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자비용 총액만을 공시	⇒ <b>리스부채</b> 에 대한 이자비용과 <b>다른 부채</b>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각각 <b>구분하여 공시</b> (K-IFRS 1116.53(2))
	③ <b>리스의 총 현금유출 미공시</b> - 현금흐름표 상의 리스부채 상환 관련 현금흐름만을 파악 가능	⇒ <b>리스부채 상황</b> 뿐 아니라, <b>단기·소액 리스료, 변동리스료</b> 등을 포함한 <b>리스의 총 현금유출액</b> 을 공시(K-IFRS 1116.53(7))
	④ <b>리스부채 만기분석 미공시</b> - 각 잔여기간별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리스부채의 유동성 여부만 구분	⇒ <b>잔여기간별</b> (예: 1 개월 이하, 3 개월 이하, 1 년 이하, 5 년 이하 등) 리스부채의 <b>만기분석</b> 내용을 공시(K-IFRS 1116.58)
	⑤ <b>사용권자산·리스부채 포함 항목 미공시</b> -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항목을 미공시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표의 <b>어떤 항목</b> 에 <b>포함</b> 되어 있는지 공시(K-IFRS 1116.47)

※ 단, 상기 주석 공시 미흡 사례는 기준서의 모든 공시 규정 및 사례를 다루지는 않으므로,

- 각 기업은 리스계약별로 新리스기준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예) 단기·소액리스 및 변동리스료 관련 비용, 전대리스 수익,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양적 정보 등(K-IFRS 제 1116 호 문단 47~60, 88~97, B48~B52, C12~C13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유의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8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11.18]

종속기업의 정의  
개정

**I. 종속기업의 정의 개정**

- 20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종속회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해당 법령을 참조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관련 기준서 문단 4.3, 4.4, 4.8 (1), 8.35, 32.3). 이에 따라 종속기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 해당 개정 내용은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이하 같음] 문단 1, 2),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과거 외감법령에서 규정한 종속기업 제외 요건과 동일)하는 피투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3 의2). (예: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투자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지만 과거 외감법령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던 피투자기업은 2019 사업연도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3 의2에 따라 여전히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II.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적용면제 대상의 명확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이하,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은 중소기업특례 적용기업의 지분법 적용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종속 기업과 관련하여 개정 전과 면제대상이 상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상기 (1)의 외감법령 개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12 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회계연도)에 경과규정에 따라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례에 따라라도 2019 년도 까지는 지분법 적용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디지털세 논의 추진 경과 및 OECD에서 제안된 통합접근법 주요내용(안)

□ OECD/G20는 2015년부터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Action 1(제1과제)

○ 디지털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 OECD/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영국, 미국, G24(개도국협의체), 독일·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 제출하였습니다('18.12월).

○ OECD사무국은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제안된 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 접근법(Unified Approach) 제안(10월 9일)

통합접근법 주요내용(안)

□ Pillar 1 : 통합접근법 주요내용(안)

○ (적용범위)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여 제안

\*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세부 내용 범위 논의 예정

- (대상업종)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하여 소비자대상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

· 금융업, 1차 산업(commodities),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carve-outs)를 검토중

- (기업규모)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threshold)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적용

○ (연계점)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을 제안

- \* OECD모델 조세조약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의 고정된 사업장소 등 물리적 실재 (physical presence)와 다른 새로운 기준
  - 다국적기업의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revenue threshold)을 초과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
  - (이익배분 방법)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 중에서 시장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3가지 종류(Amount A,B,C)로 구분
    - (Amount A: 초과이익 배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초과 이익(above normal profit) 중
      - 시장에서 창출한 가치 부분을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시장 소재지국 별 매출에 따라 배분 → 새로운 과세권 (New Taxing Right)
    - (Amount B: 기본기능 보상) 시장 소재지국 자회사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판매 활동(baseline activities)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보상
    - (Amount C: 추가기능 보상)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기능을 넘어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예:제조 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 (정상가격기준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 Pillar 2 : 글로벌 최저한세
  - (소득산입규칙)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Undertaxed Payments rule)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Income Inclusion rule)
  - (과세권 전환규칙)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이바·배당 등)에 대해 그 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exemption)하고,
    -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도 비과세·저율과세될 경우 이중 비과세 문제 발생
    - ⇒ 그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시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credit) 적용(Switch-over rule)
  - (조세조약 혜택 배제)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 혜택 부인(subject to tax rule)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 (Pillar 1 공청회) 11.21~22일, OECD센터(파리)
  - (Pillar 2 공청회) 12.13일, OECD센터(파리)
  - (IF\* 총회) '20년 1.29~30일
  - \* (Inclusive Framework) OECD/G20 BEPS 프로젝트(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약 130여 개국 참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2019.10.2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국내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투자조합으로부터 관리·성과 보수 및 수익 배분을 받는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 미국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영역 확장의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 미국에 법인(이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2019.7월 외국법인과 투자자문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용역의 주요내용은 미국 벤처투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투자의사 전달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 본건용역 수행의 결과물은 투자심사보고서의 형태로 이메일로 전달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해외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기각) (조심2019서1935, 2019.09.09)

-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모법인에 대한 미국 거주자 증명서, 수익적 소유자 입증서식 및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미국 소재 법인인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로 2014.12.24., 2015.12.11. ○○○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특허권 대가를 지급하면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들은 ①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이고, ② 설령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한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 대가의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정액일시불로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서 쟁점특허권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시행 이후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02, 2014.4.15., 같은 뜻임).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권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1924, 2019.7.5., 같은 뜻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